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29호
2024. 5. 17.(금)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503호) 1

고 시(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58호) 8

공 고(2)

-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72호) 9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575호) 10

공 략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5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공무직은”을 “공무직은 친절·공정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무 외”를 “소속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 없이, 직무 외”
로, “종사하거나”를 “종사하지 못하며”로, “경우에는 직무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수 없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대근로 등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근무형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을 “유연근무제를 실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병가·공가·경조사 휴가) 공무원의 병가·공가·경조사 휴가는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7호 중 “제6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5조”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사회적”을 “업무상 방해, 민원 발생, 사회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8호) 중 “7호”를 “제9호”로 한다.

8.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9. 직장 내 성희롱 등 행위를 한 자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인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해당 실·과장급 3명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추천한 2명을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위한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

장은 외부위원 중 1명이 그 직을 맡는다.

1. 내부위원(총 4명): 실·과장급 2명, 교섭대표노조위원장 추천 2명

2. 외부위원(총 3명): 변호사, 노무사, 노동위원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

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재심 징계위원회의 경우도 같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시정·주의) 소속부서의 장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근로자에게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 사항에 대하여 3번 이상의 주의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4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단,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다. 직무태만 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마. 부정청탁 바. 성 관련 비위 사. 기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해고	해고-정직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감봉-견책 견책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해고 해고	해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무단결근 나. 기타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해고	정직-감봉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라.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2]과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 나. 성희롱 다. 성매매 라. 기타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해고-정직 정직-감봉 정직-감봉 감봉	정직-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8.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해고	정직-감봉	감봉	견책
10.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해고	정직-감봉	감봉	견책
11. 위 각 호 외에 제38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각 호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기준을 준용하여 징계할 수 있다.				
※ 비교 1. 제7호나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제7호다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3. 제9호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하		
<p>참 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직노동자 관리 규정」 제43조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별지 제12호서식]

재심청구서		
소속	직위(급)	성명
청구이유		
청구사항		
반증서류		
<p>년 월 일부 징계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p> <p>년 월 일</p> <p>청구인 (서명)</p> <p>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징계위원회위원장 귀하</p>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검직 사전 허가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해석의 다툼을 없애고, 징계 사유를 보완하고자 하며, 징계에 이르지 않는 가벼운 잘못에 대한 시정·주의 처분을 신설하고, 단체협약 및 타부서 중복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친절·공정 의무를 신설함(제14조제4항).
- 나. 검직허가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6항).
 - 검직의 사전 허가를 명확화함.
- 다. 유연근무제를 명시함(제19조제3항).
- 라. 병가·공가·경조사 휴가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함(제24조 및 제25조).
- 마.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제32조제7호).
 - 제6조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5조
- 바. 징계사유를 보완함(제38조).
 - 업무상 방해, 민원 발생, 제14조에 따른 의무,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추가함.
- 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39조).
 - 초심·재심위원회 구성을 명확화함.
- 아. 경미한 잘못에 대한 시정·주의 처분을 신설함(제40조의2).
- 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교육, 건강검진 중복 규정을 삭제함(제47조 및 제48조).
- 차. 영리 업무 및 검직 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기준에 추가함으로써 명확히 함(별표1).
- 카. 재심청구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현행화함(별지 제11호서식).
- 타. 재심청구서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12호서식).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중리동 246-7	홍도로114번길 29	건물신축	홍도로의 시작지점부터 약 1,1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5. 17.
신대동 482-1 외 3필지	아리랑로55번길 70	건물신축	아리랑로의 시작지점부터 약 5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2024. 5. 17.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 업 명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41-1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공 고 내 용 : 토지수용재결(4차) 신청에 따른 열람 및 의견서 제출
5. 공 고 기 간 : 2024. 05. 17. ~ 2024. 06. 03.
6. 공 고 방 법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7. 공시송달대상자 :

연번	성 명	송 달 주 소 (최 종 주 소)	비 고
1	한국주택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1(대전지점)	수취인불명

8. 기 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관계서류는 공고 기간 중 열람장소(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며 의견이 있으신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공동주택과(☎042-608-4182)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끝.

공 시 송 달 공 고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 개설사업」 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4. 24.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 업 명: 도시계획도로(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 개설사업
2. 사업의 위치: 대덕구 읍내동 75-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회덕지역주택조합
4. 공고 내용: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2024. 4. 24.)
5. 공고 기간: 2024. 5. 17. ~ 2024. 6. 7.(21일)
6. 공시송달 대상자: 양봉덕 외 4명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042-608-5102). 끝.